

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-13-342(2013.12.2)

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거치식예금약관』, 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』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동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「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보장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을 통하여 효율적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

2 거래 조건

: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중서에 따릅니다.

				(201	3.12.2 현재, 세전,		
구 분	Name of the second seco	내	8				
가 입 대 상	퇴직연금사업자						
가 입 기 간	1)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: 6개월, 1년~5년까지 연단위 가입 가능 2)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: 31일~5년 이내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						
가 입 금 액	제한없음						
기 본 상 품	정기예금						
적 용 이자율	<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제도별 적용이자율> (2013.12.2 기준/ 단위: %)						
	구분	운용기간	DB	DC	IRP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6개월	최저2.59~최고2.88	2.88	2.88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1년	최저2.75~최고3.05	3.05	3.05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2년	최저3.09~최고3.43	3.43	3.43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3년	최저3.25~최고3.61	3.61	3.61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4년	최저3.34~최고3.71	3.71	3.71		
	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5년	최저3.52~최고3.91	3.91	3.91		
	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1개월이상 최저2.43~최고		최저2.43~최고2.70	2.70	2.70		
	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3개월이상 최저2.50~최고2.78		2.78	2.78		
	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	6개월이상	최저2.59~최고2.88	2.88	2.88		
	※예금 신규일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적용						
	1)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	L O	ᅐᄃᄴᄞᇝ	ᄌᆮᄴ	TIOLTL O		
중도해지이자율	특별중도해지 사유		중도해지일	중도해지이자율			
	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¹⁾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¹	6개월 미만 해지 시 여	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 의 6개월제 이자율				
	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마찬 5 마음 가면 나를 가지 않는다.	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지 시	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 의 1년제 이자율				
	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□ 수탁자의 사임 □ 하나은행 내 계약이전 □ 하나은행 내 가입자 제도 전환 □ 기입자의 사망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		1년 이상 해지 시	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			
	<u>수수료납부</u>	까지에 대해 '	신규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에 대해 '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자율'				

구 분	내 용						
중도해지이자율	1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)중도해지이자을 ① 계약기간 6개월 미만 제약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~3개월 미만 3개월 이상~6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자을 0.1% 0.5% 1.0% ② 계약기간 6개월 이상 :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¹⁾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²						
	주1)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: 신규(또는 재예치) 당시 고시 금리 주2)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(경과일수 / 계약일수) 경과일수 0.1이내 0.1초과 0.2초과 0.3초과 0.4초과 0.5초과 0.6초과 0.7초과 0.8초과 0.9초과 /계약일수 ~0.2이내 ~0.3이내 ~0.4이내 ~0.5이내 ~0.6이내 ~0.7이내 ~0.8이내 ~0.9이내 ~1.0미만 총경과기간별 5% 10% 15% 20% 25% 30% 35% 40% 45% 50% ※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"0.9초과~1.0미만" 구간의 차등률을 적용						
만기 후 이자율	예금의 만기 시 자동재예치 되므로 만기 후 이자율은 없음						
만시기 재예치	1)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된 금액을 재예치 2) 단,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 (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은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1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으로 자동재예치)						
재예치의 처리	- 원금파 이자 재예치 - 재예치 횟수 제한 없음 - 재예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 이자율을 재예치일 이자율로 적용 - 동일한 계좌번호 사용 (계좌번호 변경 없음) (예) 2011.06.01에 2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면, 예금만기일인 2013.06.01 에 가입기간 2년의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재예치 됨 (*재예치 예금의 신규일 : 2013.06.01 / 만기일 : 2015.06.01) - 단,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재예치시 계좌번호 변경					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						
분할해지	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단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						

구 분	내 용		
예금자보호여부	확정기여형:해당	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및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 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
	*용어안내	□ 개인형퇴직연금: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•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□ 확정기여형: 사용자(기업)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□ 확정급여형: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	

3 유의사항 : 본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퇴직연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-1111 (서비스코드: 예금상담 012)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


